

대법원 2018. 3. 29 선고 2017다28911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3. 29 선고 2017다289118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7. 11. 17 선고 2016나75418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6. 10. 31 선고 2016가소20588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주식회사 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2018. 3. 29.

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6나75418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

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
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권순일

주심대법관고영한

대법관김소영

대법관조재연